# 국가외환관리국 이전가격조정 외환수지업무 관련 관리정책 Q&A 발표

2021 년 1월

Issue 4

# 개요

포스트 BEPS 시대의 국제조세시스템의 변혁, 코로나 19 의 글로벌기업 경영에 대한 Challenge 및 중국 반조세회피 관리감독과 조사조정시스템이 나날이 보완됨에 따라, 이전가격을 포함한 국제조세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할지가 글로벌 기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무 진행 과정에서 외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및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집행 결과와 정책이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은 이전가격조정(TP adjustment)을 통해 실제 집행 결과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역의 외환관리부서 및 은행은 거래에 대한 사실성, 합규성 심사를 기초로 하여 국내 회사가 해외로부터 이전가격 보상을 수취하는 플랜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2021 년 1 월 19 일 <서비스무역 외환관리정책 Q&A (2)>(이하 <정책 Q&A>)¹를 발표했습니다. "은행이 특별납세조정에 따른 글로벌 회사의 이익보상 외환수지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은 처음으로 정책 측면에서 글로벌기업 이전가격조정금액의 외환수지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기업의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 상세 내용

<정책 Q&A>는 국가외환관리국이 2020년 8월 31일 발표한 <국가외환관리국의 "경상항목 외환업무가이드 (2020년판) 발행에 관한 통지>(회발[2020]14호, 이하 "14호문")를 인용, 은행이 기업의 해당 유형 외환수지업무 처리 시 업무전개원칙에 따라 거래의 진실성, 합규성 및 외환수지의 일치성 등에 대해합리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하기 3가지 이전가격조정 방식의 은행 심사 및 신고에 대해설명했습니다:

- 기업이 이전가격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이익보상 외환수지업무
- 기업이 원가분담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이익보상 외환수지업무
- 기업이 기타 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이익보상 외환수지업무



#### 방식 1

14 호문 제 47 조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무역 외환수지는 진실성을 지녀야 하며, 합법적인 거래를 기초로 해야 한다". 방식 1 에서, 이전가격조정의 진실성, 합규성 및 외환수지와의 일치성을 심사하기 위해 은행이 심사해야 할 문서는 "세무부문 또는 해관부문의 관련 서면 문서, 이익조정협의서, 화표(发票)" 등 자료를 포함하며, 기존 무역 방식(화물무역 또는 서비스무역)에 따라 관련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합니다.

< 정책 Q&A>는 "세무부문 또는 해관부문의 관련 서면 문서"의 구체적인 양식과 내용 요건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각 지역 세무부문 및 해관부문이 어떻게 해당 서면 문서를 발행할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기관에 비해 기업이 해관을 통해 이전가격조정 시행 시 취득하는 "해관부문 관련 서면 문서"(예: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해관신고서)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현행 중국 이전가격 법규에 따르면, 세무부문이 특관거래 이전가격조정에 대해 발행할 수 있는 "관련 서면 문서"의 형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로 (1) 이전가격사전약정(APA)문서, 즉 주관세무기관과 기업이 진행한 일방 APA 협상/합의 시 제정한 일방 APA 문서; 또는 국가세무총국과 조세협정 체약상대방 세무주관당국이 진행한 쌍방 APA 협상/합의 시 작성한 쌍방/다자간 APA 문서; (2) 이전가격조사조정에 대해 세무기관이 기업에 송부한 <특별납세조사조정통지서>를 포함합니다.

방식 1 은 APA 집행/갱신 기간이나 이전가격 입안조사 결안 후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이전가격조정 외환수지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의할 점은, 기업 자체의 내부관리 필요에 따라, 또는 세무기관이 발행한 <세무사항통지서>, <세무리스크 통지서한/답신표>에 따라 기업은 과거 연도의 특관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세무기관은 어떠한 행정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관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사조정통지서>와 같은 법률 문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기업은 방식 1 에 따라 외환수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 과정에서 외환관리부문이 세무기관의 업무 도장을 날인한 <특별납세조정자체납부세금표>를 "세무부문의 관련 서면 문서"로 간주하여 기업이 방법 1 에 따라 외환수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방식 2

<정책 Q&A>은 "기업이 원가분담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외환수지업무는.....권리 조항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재무보고서 및 화표 등 자료를 검토하고......'보험과 무관한 배상'으로 '424000 기타 2 차 소득 (경상이전)' 항목에 신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해에 따르면, 여기서의 "원가분담방식"이란 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그룹기업이 관련 구성원 회사를 대표하여 수익 공유, 원가/리스크 분담 원칙에 따라 외부 제 3 자 또는 특관자와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업무 거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원가분담방식"은 중국 특별납세조정제도에 따른 "원가분담협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방식 2 를 통해 이전가격 외환수지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여전히 관련 문서를 준비하여 원가분담방식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며 각특관자간 기능/위험과 수익이 배분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방식 3

방식 3 은 기타 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업무 모델과 이전가격 약정이 각각 상이함을 고려할 때, 기타 조항의 삽입은 각지 외환관리부문이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기업의 경영 중 발생하는 이전가격조정 외환수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저희의 실제 경험에 따르면, 기업은 거래에 관한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 이전가격조정의 필요성 및 이전가격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환금액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 완벽한 분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업은 여전히 이전가격조정 집행 과정에서 은행 및 각지의 외환관리부문과 관련 이슈, 예를 들면 실무 과정에서 세가지 이전가격조정 방식의 구분, 글로벌 기업의 이전가격조정이 14 호문의 관련 개념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예: 연말 이전가격조정의 이익보상 방식, 피험자의 선택, 원가분담방식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 핵심 요점

 2020 년 이래, 코로나 19 의 발발은 글로벌기업의 이전가격 약정의 합규성에 중대한 Challenge 를 가져왔으며, 글로벌기업으로 하여금 이전가격 연말조정 방법을 통한 현지 특관기업의 이전가격 컴플라이언스 수준 제고를 더욱 중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정책 Q&A>는 처음으로 외환관리 관점에서 기업의 이전가격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외환 업무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주체가 경상항목 외환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이 이전가격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줄이고 잠재적 국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외환/세무/해관 관리 부문이 향후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더 많은 협력과 조율을 제공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실무 중 이전가격조정은 기업소득세, 간접세, 관세, 외환관리 및 회계장부 등 많은 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기업은 이전가격조정 진행 시, 반드시 관련 관리감독당국(예: 외환, 세무, 해관 등 부문)의 최신 절차 요건을 확인하고, 은행, 감사인, 세무사 등과 긴밀히 커뮤니케이션 하여, 규정에 부합하며 적시성을 지닌 이전가격조정의 실현을 보장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이전가격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수지업무에 대해, 기업은 여전히 실제 상황에 따라 주관 외환관리국 및 은행과 커뮤니케이션 하여 어떻게 <정책 Q&A>의 정신과 요건에 따라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주석

1. 자세한 내용은 http://www.safe.gov.cn/safe/2021/0119/18068.html 참조.

#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PwC China KBD CONTACT LIST**

- 대표 나상원 Partner (86) (21) 2323-2625 sang.won.la@cn.pwc.com
- 북경 (회계감사 & Tax) 김도현 Directo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 (회계감사 & Tax) 유태정 (86) (10) 6533-5733 taejeong.t.you@cn.pwc.com
  - (TP) 박영인 (86) (10) 6533-3891 young-in.y.park@cn.pwc.com
-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 (회계감사 & Tax) 정자헌 (86) (21) 2323-8879 jaheon.j.jeong@cn.pwc.com
  -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 소주 (회계감사 & Tax) 황홍석 (86) (512) 6273-1850 hongseok.h.hwang@cn.pwc.com
- 광주 (회계감사 & Tax) 박길수 (86) (20) 3819-2503 gilsoo.p.park@cn.pwc.com
-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Advisory) 한승희 Partner (86) (21) 2323-3167 jennifer.s.han@cn.pwc.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1 年 1 月 27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mark>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mark>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或 http://www.pwchk.com

# www.pwccn.com

© 2021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